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67

발의연월일: 2022. 5. 2.

발 의 자: 민형배·강득구·강민정

김용민 • 박상혁 • 박성준

송갑석 · 송재호 · 유미향

윤준병 • 이정문 • 장경태

정필모 · 황운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보험협회의 재량에 맡긴 것입니다.

문제는 관련 고시인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협회에게 보험계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점입니다. 상위규범에서 부여한 재량을,하위규범은 위임근거·범위와달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협회의 재량 비교·공시는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보험사 간 정보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도록 개선하고

자 합니다(안 제124조제2항). 법령체계상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 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제 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 중 "비교·공시할 수 있다"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공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4조(공시 등) ① (생 략) | 제124조(공시 등) ① (현행과 같 |
| | 음) |
| ② 보험협회는 보험료·보험금 | ② |
|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 |
|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 |
| 따라 <u>비교·공시할 수 있다</u> . | <u>보험소비자가 쉽게 알</u> |
| | 수 있도록 비교·공시하여야 한 |
| | <u>다</u> .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